사회복지학과 발표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 필요성 제언
: 셰어런팅(Sharenting)을 중심으로

사회복지학과 김민주
사회복지학과 이승우
사회복지학과 최서진
사회복지학과 홍지환

지도교수: 조성환
멘토: 일반대학원 이승이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문제
3. 연구 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아동 관련
2.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관련
3. 셰어런팅 관련

Ⅲ. 본론
1. 국내외 셰어런팅 현황 및 논의
2. 셰어런팅과 관련한 사회복지학적 접근

Ⅳ. 결론 및 제언
1. 셰어런팅의 한국형 모델 제안

Ⅴ. 참고문헌

<표 목차>

<표 1> 법 체계 속 아동의 연령범위
<표 2> 자녀 공개 학부모 교육
<표 3>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 개인정보 관련 주요내용
<표 4>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관련 특성 및 원칙
<표 5> 보호자 대상 아동 연령대별 교육 내용(예시)

<그림 목차>

<그림 1> 자녀 공개(셰어런팅, Sharenting)에 대한 올바른 보호수칙을 담은 학부모, 교사 대상 교육과정
<그림 2>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013년 5월,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인 '셰어런팅(Sharenting)'은 공유(Share)와 양육(Parenting)의 합성어로,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소셜 미디어 플랫폼(SNS)에 올리고 공유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디지털 정보사회의 도래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SNS) 사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사회적 흐름과 부모로서 자녀의 모습을 기록하고 공유하고 싶은 욕구가 더해져 셰어런팅은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행위가 되었으며, 이는 특히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SNS) 사용이 급증한 2010년대 이후로 자주 발생했다.[1] 세이브더칠드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1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의 84%,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의 89%가 주기적으로 셰어런팅을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2]

셰어런팅의 확산 배경 중 하나는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SNS) 및 디지털 기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가 2030 젊은 부모들이 된 것이다. 능숙한 매체 활용 능력을 기반으로 자녀의 일상을 기록하고, 정보를 나누며 이를 타인과 공유한다. 이와 같은 추세는 부모의 의도와 무관하게 자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다. 이는 자녀의 프라이버시와 사생활 침해 문제를 일으키며, 그들에게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또래 집단 내의 따돌림, 나아가 딥페이크와 같은 사이버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증가시킨다(김송이, 2015).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관리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중요한 이유이다. 더욱이 아동의 경우엔 성인과 비교해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고 인식되어 셰어런팅이 확산되기에 각별한 관심과 규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셰어런팅의 잠재적 위험성이 심각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은 전무하다. 셰어런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은 현재 시행되고 있으나, 각 법률이 설정하고 있는 아동의 연령 범위가 다를 뿐 아니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아동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SNS와 같은 소셜 미디어, 인터넷 환경에 노출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는 능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고, 셰어런팅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 없이 부모의 의사만으로 사생활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의 보호가 필요하며, 더하여 셰어런팅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는 한 번 업로드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삭제하지 않는 이상 영구히 보존되는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 그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셰어런팅 용어 자체에 대한 의식 수준도 낮다. 다만 그 피해 사례는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어린 나이서부터 인터넷 매체에 노출되었었던 한 아동은 미디어에 노출된 경험이 장기적으로 기억에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 아동은 미디어 출연을 통해 가족과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었기에 긍정적인 경험이 있었으나, 성장하면서 외모와 관련된 부정적인 댓글이나 친구들의 놀림을 겪으며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음을 밝혔다.[3] 한편, 셰어런팅을 중단한 한 부모의 사례도 존재하였는데, 해당 부모는 유튜브 채널을 중단하게 된 이유로 유튜브 채널 운영 중 겪었던 두려움과 아이의 안전 문제가 있었음을 설명했다. 특히 사진과 달리 영상에서는 배경 노출이 불가피해 아이의 안전이 가장 큰 우려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아동 인권 법률 전문가는 인터뷰에서 셰어런팅은 아동의 개인정보를 장기적으로 노출시키며, 이로 인해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경고했다.[4]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스마트폰과의존실태조사」, 2010, 2024.10.31, 인터넷 이용이 늘어난 이유(2010)
2) 「부모의 SNS 이용 시 자녀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설문조사」 세이브더칠드런, 2021
3) 법무법인 법승 대전,(2024.06.21.). SNS에 자연스레 올린 자녀양육일기의 위험성 [이승우 변호사 인터뷰] https://www.lawwin.co.kr/daejeon/newsdetail?index=5534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셰어런팅 문제의 해결책이 시범사업 형태에 그치지 않고 정책화까지 이어져야 함을 촉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회복지학적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복지상태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셰어런팅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차별점을 갖는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KASW)가 제정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저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사회복지는 개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추구함을 드러내고,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의 제1장 제1조(목적)은 각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영유아(嬰幼兒)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법의 존재 의의이자 법의 핵심을 관통하는 중요한 위치에서 ‘복지’를 논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셰어런팅 문제의 사회적 의식과 정책적 미비에 대한 문제를 사회복지학적 측면에서 논의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셰어런팅의 한국형 모델을 제시하여 국내의 셰어런팅 문제들을 해결 및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의 셰어런팅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제시하여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언하고, 사회복지학의 실천 영역을 디지털 환경으로 확장함으로써 사회복지 실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여 미래 사회복지 정책과 실천에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갖는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셰어런팅 문제를 다루기 위해 사회복지학적 측면에서 어떤 접근이 필요한가?

(2)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3) 국내의 셰어런팅 관련 법률 및 서비스가 정착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국내외 셰어런팅 정책의 현황과 차이를 비교하고, 현재 국내에서 정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을 분석하여 국내 셰어런팅 정책 필요성 제언 및 셰어런팅의 한국형 모델 제안을 목표로 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국내외 사례 분석, 전문 기관과의 질의응답을 주요 방법론으로 채택하였다.

국내 사례 분석에서는 국내에서 시행되었던 셰어런팅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서비스의 특징을 분석하여 국내에서 셰어런팅 문제가 정책화까지 이어지지 않은 이유를 알아보고자 하였고, 해외 사례 분석에서는 프랑스, 미국 등 대표적으로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보호 정책이 발달한 일부 서구 국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국가들의 정

4) (WOMAN DONGA, (2024.03.26.).“아이를 위해 유튜브 은퇴했어요” 88만 유튜브 ‘진정부부’ 김민정·이루다 https://blog.naver.com/gurwn1725/223154519415

책 특징을 분석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국내 셰어런팅 정책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셰어런팅 정책 부재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측과 전화를 통해 질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셰어런팅 관련 정책의 현황과 정책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요인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국내 셰어런팅 정책화 지연 원인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II. 이론적 배경

1. 아동 관련

1) 아동 연령범위 규정

현재 우리나라의 각 법률에서는 영유아와 아동의 연령 범위를 정의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서는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영유아'도 만 7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을 뜻한다. 그러나 아동의 연령 범위는 관련 법률마다 그 기준이 다르기에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연령 범위를 확실히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1> 법체계 속 아동의 연령범위

구분	명칭	나이
형법	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
민법	미성년자	19세 미만
아동복지법	아동	18세 미만
소년법	소년	19세 미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9세 이상 ~ 24세 이하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19세 미만

한국의 민법체계와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내용이 같은 미국의 법체제에서는 개인의 민법상의 능력(civil competence)의 판단 기준을 아래 네 가지로 두고 있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1) 의사결정을 하는데 관련된 기초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
2) 다양한 선택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기초 정보를 특수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
3) 다양한 전략이나 결정에 대한 장·단점을 평가하는 논리적이거나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
4) 주어진 상황에 관한 개인적 결정이나 선택에 대한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능력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아동이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의사무능력자 및 행위무능력자로 간주하고, 따라서 이들의 법률 행위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위 사실을 근거로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명명하고 사용하고자 한다.

2) 아동 권리 능력

법적 능력이란 법률관계에서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권리능력)과 일정한 법적 행위를 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지능 내지 자격(의사능력, 행위능력, 소송능력), 그리고 일정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지능 내지 자격(책임능력) 등을 말한다.

(1) 권리능력

권리능력이란 민사법상의 권리자나 의무자가 되기 위한 기초적인 자격을 의미하는 법학용어이다. 민법은 권리능력이라는 용어 대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표현한다(민법 제3조). 재산법상의 권리능력은 소유권 자유와 관련된 능력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하며 모든 사람에게는 생존하는 동안 평등하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므로, 모든 아동을 비롯한 미성년자가 권리능력자이다. 민법의 재산법은 물권과 채권을 포함한다. 가족법상의 권리능력은 혼인, 이혼, 입양, 인지에 관련한 당사자, 부모, 후견인의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의사능력

의사능력이란 자신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하며 개인의 행위가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려면 반드시 의사능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만약 행위자가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의사무능력자였다면 그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효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어떤 행위가 무의식행위였다면 유효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법률 적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동은 민법의 법률행위를 하기 위한 조건인 의사능력이 결여된 의사무능력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계약능력이나 소유능력 등의 법률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다.

(3) 책임능력

우리나라 민법은 적법행위인 법률행위와 위법행위에 필요한 행위주체의 자격을 다르게 규정한다. 즉, 행위능력과 책임능력(불법행위능력)은 개념상 구별되고 능력취득자격에서도 다르다. 행위능력은 획일적 기준에 의해서 부여되는 반면에 책임능력은 개별의 불법행위사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행위능력은 만 20세에 취득되고 책임능력은 대개 만 12세부터 인정된다. 과실책임 즉 자신의 가해행위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자는 책임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4) 행위능력

행위능력이란 행위자가 단독으로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권리능력은 권리보유의 가능성에 관한 것인 반면에 행위능력은 권리 취득을 위한 법률행위의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권리능력은 재산과 금전을 소유할 자격을 부여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행위능력은 행위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로서 요구된다. 권리자나 의무자는 법률행위를 할 때에 행위능력을 갖추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그 능력이 보완되어야 한다. 사람이면 누구나 행위능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나 민법은 예외적으로 행위무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하도록 행위능력을 제한한다. 행위능력은 실질적으로 한정된 범위의 행위무능력자를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행위능력무능력자로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5]의 세 가지 유형을 규정한다. 따라서 만 20세가 되지 않은 아동은 독자적인 행위능력을 할 자격이 없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3) 아동 권리 보장의 당위성

아동의 권리 보장은 그들의 권리능력에 기초하여 당연시 되어야 하는 요소인 점에는 이견이

5)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청소년보호위원회(2000)에서 한정피후견인, 성년피후견인으로 언급된 개념이다. 현재 한정치산자는 성년후견인 또는 특정후견, 금치산자는 성년후견인으로 대체되어 쓰인다.

없을 것이다. 아동 역시 기본권을 보장 받아야 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다만 아동의 발달 특성상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기에 동시에 법적 무능력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아동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기에 법적·행정적 장치를 통해 권리를 보장한 당위성이 존재한다. 더하여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잊혀질 권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아동을 그 대상으로 정확히 명시하진 않았다. 이렇듯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기에 셰어런팅을 논하기에 모호한 지점이 존재한다. 해당 미비를 보충하기 위해 연구는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윤기봉, 김민주, 김햇살, 강하늘, 2023).

2.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관련

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정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가 자기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현대 사회는 '데이터의 홍수'라 비유될 만큼 방대한 정보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환경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할 핵심 권리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 권리가 인간의 기본권인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논의 배경이 된 독일의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정보 자기결정권)"은 1971년 처음 사용된 것이며, 1983년에는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해당 권리는 국가에 대한 기본권이라는 특성과 사인(私人) 간에서도 논할 수 있는 점을 들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기본권임을 시인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대한민국에서도 헌법상 권리로 인정받고 있다. "열손가락 지문날인사건" 에서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또는 위 조문들과 동시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기본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라는 사례가 존재한다. 다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특정 헌법 조항에만 국한되지 않고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기본권이다." 라는 가설은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유사 권리들의 정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정의하며 언급한 인격권을 포함하여, 유사한 개념의 권리들인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잊힐 권리의 개념을 다루고자 한다. 각 권리의 개념을 간략히 정의하고,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인격권은 개인의 생명, 자유, 신체, 명예 등 인격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근간을 이룬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인격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인격권이라 일컫는다.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는 법에 성문화된 권리는 아니다. 지난 2014년 5월 EU 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의 "정보주체는 자신에 관한 검색결과를 검색엔진에게 삭제 요청할 수 있으며 검색엔진은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삭제해야 한다." 라는 판결로부터 시작된 개념으로, 같은 판결에서 EU 사법재판소는 잊힐 권리는 그 자체로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 표현이나 언론의 자유와 같은 타 기본권들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

다고 밝힌 것을 보아 현재까지 논한 여타 권리들보다는 법적, 행정적 효력이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 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다. 초상권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보장된다. 초상권을 침해 당했을 시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근거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그 밖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다. 이는 타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이용해 경제적 가치를 꾀했다는 점에서 초상권과는 구분된다. 2022년 6월 8일 개정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되며,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은 사생활권이라고도 하며 퍼블리시티권에 비해 인격권적 성격을 띤다. 개인이 무단으로 촬영, 공표되지 아니할 권리를 뜻하며, 정신적 고통의 침해 형태에 집중한다.

3)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의 권리 해석

위와 같은 권리들을 사회복지학적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권리 보장이 복지사각지대를 완화 시켜주며, 또한 셰어런팅을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에게 인간 존엄성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해야 함은 한국 사회복지 윤리강령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이다. 아동은 법적무능력자이며 성인에 비해 권리 능력 등이 부족하다. 이는 아동을 취약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아동복지법」과 같은 특정 대상만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및 정책이 존재한다는 점도 근거가 된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 위와 같은 권리들을 논하는 이유는 사회복지사는 전문인력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신뢰를 주고, 전문가 윤리를 지키기 위해 행동양식에 근거가 존재해야 한다. 해당 근거는 법률과 정책이며, 이는 권리에서 파생된다. 이를 통해 실제로 그들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원체계와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 셰어런팅 관련

본 연구에서는 셰어런팅(Sharenting)을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아동 권리의 중요성을 다룬 선행연구들과 비교한다면 셰어런팅 자체를 중심 소재로 잡은 논문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연구의 부족은 해당 개념의 논의가 미비하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며, 해당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끌어올려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셰어런팅이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사안이라고 정의했기에 아동학대와도 결부될 여지가 있다. 셰어런팅은 아동학대인지에 여부에 대해서도 논해보고자 한다.

1) 셰어런팅의 정의

셰어런팅(Sharenting)의 이론적 정의는 부모가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습관적으로

업로드하는 현상이다. 공유의 Share와 양육의 Parenting을 합친 용어로, 자녀의 성장 과정이나 인적 사항에 대한 글,사진, 영상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가 모두 포함된다. (윤기봉, 2023). 본 연구에서는 셰어런팅 행위를 경계하지만, 물론 장점도 존재한다. 셰어런팅의 장점으로는 양육행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받고 비슷한 아이를 키우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동료 부모와 소통하여 각자 팁을 줄 수 있다. 또, 자녀의 성장 과정에 대한 기록과 가족들 간 아이 사진 공유를 위해서 오프라인 상에서 자주 못 만나는 지인들에게 자녀에 대한 소식을 올리며 최근 근황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이 존재한다. (윤기봉, 2023).

2) 셰어런팅과 아동학대의 연관성

본 연구에서는 셰어런팅 행위 자체는 아동학대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아동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에 규제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셰어런팅 정책화 촉구라는 본 연구의 결론과도 이어진다. 셰어런팅 행위는 단순히 아동을 찍고 공유하는 것이기에 당장 아동의 정신건강에 문제를 주지 않을 수 있고, 전술했듯이 장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논의 중요성이 흐려질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흐름은 해당 연구를 포함해 모든 사회문제를 다룰 때 경계해야 할 점이다. 셰어런팅 행위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이를 무분별하게 행한다면 절대적인 피해 사례 및 피해 아동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아동학대 증가에 기여한다. 따라서 셰어런팅 관련 가이드라인 및 정책화가 마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여 아동의 권리와 행복을 보장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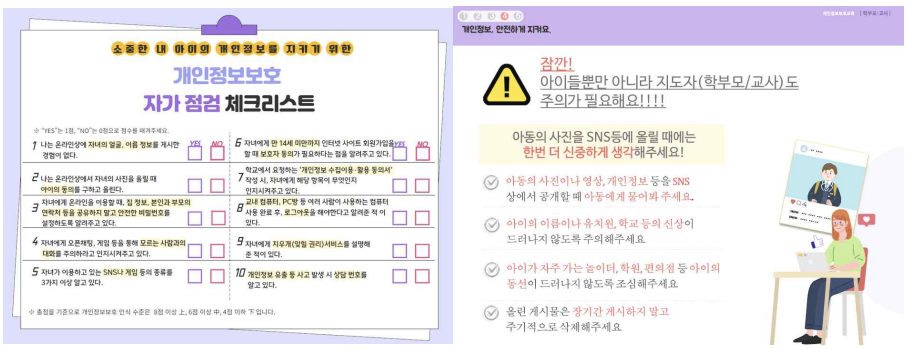
III. 본론

1. 국내외 셰어런팅 현황 및 논의

1) 국내 셰어런팅 관련 법률 및 서비스

(1) 셰어런팅 및 개인정보 관리 인식개선

① 교육 프로그램



<그림 1> 자녀 공개(셰어런팅, Sharenting)에 대한 올바른 보호수칙을 담은 학부모, 교사 대상 교육과정[6)]

6) KISA. (2023). 정보주체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재.

<표 2> 자녀 공개 학부모 교육[7)]

구분	
시행	2023년 6월 신설
대상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와 지도교사 1000여 명
방법	신청제
내용	셰어런팅 피해 사례를 비롯해 가정과 학교에서 자녀 공개(셰어런팅) 시 유의할 개인정보 보호 실천수칙,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권리 보장 방법 등

최근 들어 사회관계망에 부모가 올린 자녀의 일상 사진으로 자녀의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른바 자녀 공개(셰어런팅, Sharenting)에 대한 올바른 보호 수칙을 담은 학부모, 교사 대상 교육과정이 2023년 6월 신설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밝힌 올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에 따르면, 자녀 공개(셰어런팅)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마이데이터 등 최신기술 처리자 대상 보호 교육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전환기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개인정보 교육이 중점 운영될 계획이다.

먼저 자녀 공개(셰어런팅) 교육과정은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와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총 10회(1,000여 명) 실시되었다. 가정과 학교에서 자녀 공개(셰어런팅) 시 유의할 개인정보 보호 실천수칙,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권리 보장 방법 등이 사례와 함께 교육 내용에 포함되었다.[8)]

②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과 함께, 2023년부터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 전용 누리집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누리집은 캠페인 소개와 함께, 내정보 지킴이 콘텐츠 및 지킴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내정보 지킴이 콘텐츠에서는 셰어런팅을 비롯한 사회관계망(SNS) 사용, 학교생활, 직장생활, 아파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스팸, 광고 동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확인 등 일상생활의 주요 사례별로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보호 실천 수칙을 안내한다. 또한, 지킴이 서비스 메뉴에서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요구, 본인 확인 내역 조회, 웹사이트 회원 탈퇴, 지우개 서비스, 털린 내정보 찾기, 침해 신고, 분쟁 조정 신청 등 국민의 권리 행사를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고 있다.[9)]

(2)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서비스

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가. 개인정보보호법[10)]

---

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5. 23.). "자녀사진, 알고 공유합시다!".
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5. 23.). "자녀사진, 알고 공유합시다!".
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9. 13.). "내 정보는 지키고 안전하게 즐겨라".
10) 「개인정보 보호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법정대리인의 열람 등 요구권, 명확하고 쉬운 개인정보 고지 의무, 정부의 아동 개인정보보호시책마련 의무 등 규정
「위치정보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등 규정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등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명확하고 쉬운 고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표 3>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 개인정보 관련 주요내용

구분	
아동 범위	14세 미만
대상 사업자	개인정보처리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특례 규정 있음)
일반원칙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 사용 의무 개인정보위원회의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의무 규정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동의를 받을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의무도 있음)
특징	법정대리인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등의 요구권 규정
제재	**<개인정보처리자>** (과태료)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과징금)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2022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후속 자료인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에서는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부록에서 보호자 및 교사를 위한 안내사항을 두며 아동의 연령을 유아기,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으로 세분화하고 그 연령대별 특성에 맞는 보호자와 교사의 역할을 안내하고 있다.

<표 4>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관련 특성 및 원칙

특성	개인정보 보호 원칙
의사표시의 불완전성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
수집한 정보의 지속성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광범위한 활동 범위	권리 실현을 위한 적극적 지원
다양한 개인정보 권련 주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아동의 역량 강화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보호조치

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

아동·청소년은 자신에 관한 정보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주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법정대리인은 아동이 향후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아동과 충분히 소통하고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11)]

나) 아동 최선의 이익 고려

아동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은 UN 「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f Rights of the Child)」 제 3조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 인권의 기본원칙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12)]

다) 권리 실현을 위한 적극적 지원

아동·청소년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개인정보 침해 시 스스로 구제 절차를 이용할 능력이 성인에 비해 제한적이므로 아동·청소년의 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 기업, 국가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13)]

라) 투명성 확보를 통한 아동의 역량 강화

아동·청소년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는 등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개인정보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14)]

마)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보호조치

아동은 성인에 이르기까지 급격한 신체적·인지적 발달과정을 거칠뿐만 아니라 연령대별로 온라인 이용행태가 다름. 따라서 연령대별 아동·청소년의 역량과 이용행태 등을 고려하여 각 연령대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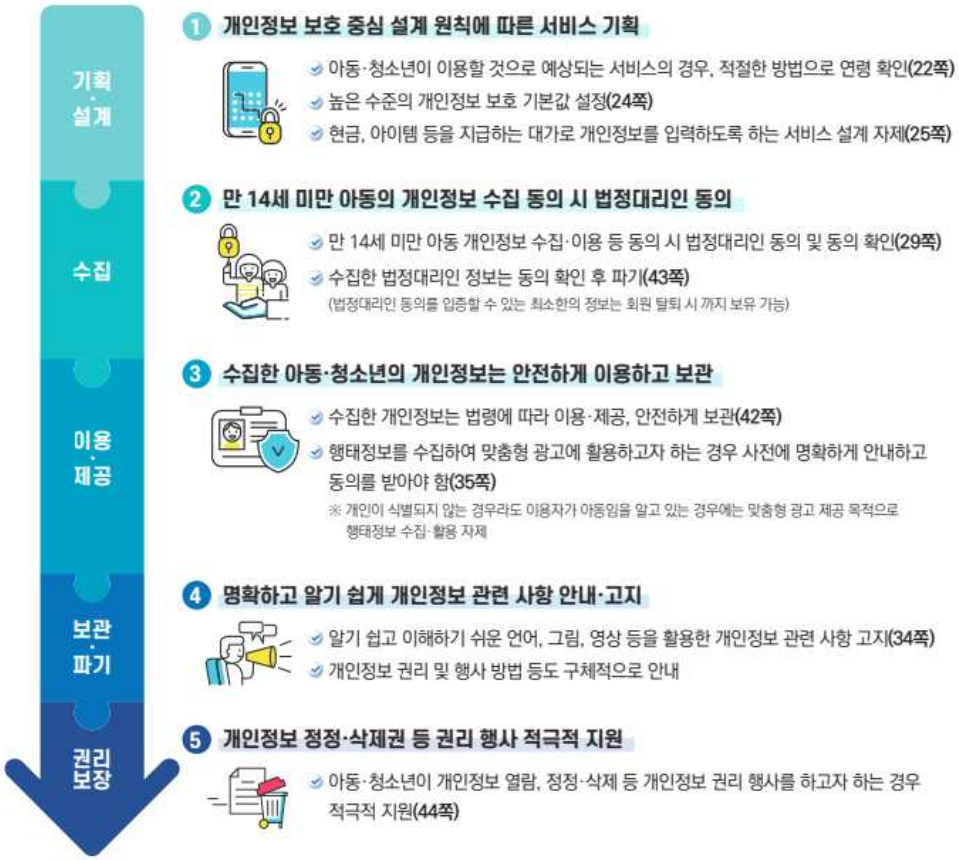
1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2) 「UN 아동권리협약」 제3조-①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3) 「개인정보 보호법」제39조의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⑥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이용자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4)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22.7.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림 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개인정보처리자

<표 5> 보호자 대상 아동 연령대별 교육 내용(예시)[16)]

구분	주요 내용
유아기 (만3세~만6세)	• 보호자의 SNS 등에 아동의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셰어런팅 자제 • 아동이 이용하는 기기나 서비스의 기능 옵션을 아동 연령에 맞게 설정
초등학교 저학년 (만7세~만9세)	• 아동과 함께 인터넷 사용시간, 장소 등에 대한 규칙 정하기 • 개인정보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
초등학교 고학년 (만10세~만12세)	• 인터넷의 안전한 사용에 대해 아동에게 알려주고 대화하기 • 개인정보 침해 시 대처 방법 교육
중·고등학생 (만13세~만18세)	•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개인정보 관련 내용 확인하는 방법 교육 • 정정 삭제 처리정지 · , 등 개인정보 권리 및 행사 방법 등 교육

②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가. 유출된 개인정보 관리

데이터 기반 신기술 등장과 디지털 전환으로 일상 속 개인정보 처리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자율적 보호 실천 문화가 중요하다. 그 가운데 개인정보 관리를 원활하게 도와주는 서비스들도 등장했다. 이 서비스들은 디지털 시대에

16) 관계부처 합동. (2022),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안).

개인의 온라인 흔적을 관리하고, 불필요하거나 유해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서비스의 대부분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화이트미(White me) 서비스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우개 서비스'가 있다.

화이트미 서비스는 '디지털 이미지 케어 서비스'로, 과거 '디지털 장의사'라는 명칭으로 불렸으나, 명칭에서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서비스 이용을 꺼리게 되는 것을 우려하여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 또한 개인과 기업의 온라인 존재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고자 변경된 명칭을 지향하고 있다. 화이트미 서비스는 온라인 상의 잊힐 권리를 기반으로 흑역사나 사이버범죄의 근원이 되는 다양한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삭제하여 72시간 골든타인 내 개인과 기업을 보호하는 온라인 케어 서비스이다. 또한 이용자들이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온라인 정보의 흔적을 효과적으로 정리해 주며, 특히 민감한 정보와 관련해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17)]

두 번째로,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를 지원하는 '지우개 서비스'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부터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절 올렸던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접근 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지우개 서비스는 '지켜야할 우리들의 개인정보'의 준말로,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성장한 세대인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대상으로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개인정보위원회가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지우개 서비스는 주로 민감한 개인정보나 불필요한 온라인 흔적을 삭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불법적으로 유포된 개인정보나 개인 게시물 삭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온라인 상의 유해한 정보를 제어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게시물 삭제, 게시물 검색 방지,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 공식적인 정책화는 되지 않았지만, 점차 법제화를 통한 전면적인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18)]

국내의 또 다른 서비스로 안랩(AhnLab)의 개인정보 차단 필터(Privacy Filter for Web)를 예시로 들 수 있다. 안랩은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온라인 흔적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며,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해 개인정보의 노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탐지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안랩의 솔루션은 일반적인 보안 소프트웨어와 결합되어 있어, 개인의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다. 안랩의 서비스는 차단 정책과 AI 엔진을 통한 개인정보 식별로 웹에 민감정보나 불건전 게시물이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탐지하고 이를 보호하는 기능이 주를 이룬다.

나. 법적 한계

특정 인터넷 플랫폼이나 포털 사이트와 직접적인 협약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요청한 정보의 삭제를 100% 보장하기 어렵다. 특히 Google, Facebook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은 한국의 법적 규제에 제한적으로만 대응할 수 있어, 사용자가 요구하는 삭제 요청이 항상 수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의 정보 삭제 요청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더욱 복잡해진다. 법적 강제력 없이 삭제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최종 결정은 해당 플랫폼의 정책과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포털 사이트가 자사 정책에 따라 일부 정보는 삭제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자는 원하는 정보를 삭제할 수 없는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는 해당 국가의 법률을 따르기 때문에 삭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국 내 서버에 저장된 정보는 한국의 법에 따라 삭제 요청이 가능하지만, 해외 서버에

17) 화이트미(whiteme): 온라인 일상회복의 첫 걸음 공식 홈페이지 서비스 소개. https://www.whiteme.co.kr/%EC%84%9C%EB%B9%84%EC%8A%A4%EC%86%8C%EA%B0%9C.
18) 개인정보 포털_개인서비스_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제도 안내.

있는 정보는 그 국가의 규정을 따르게 된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GDPR(유럽의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국제적인 법에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해 한국 사용자의 삭제 요청이 반드시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적 환경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삭제하고자 할 때 다양한 제약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개인의 개인정보 삭제 요청이 공공의 이익과 충돌할 경우 삭제가 거부될 수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공익적 목적이나 대중의 알 권리와 관련된 정보는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사건이나 범죄와 관련된 정보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일정 기간 동안 삭제가 불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인의 권리가 공공의 이익과 맞물려 복잡한 법적 판단이 요구된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허위 사실 유포와 같은 문제는 법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사항은 즉각 삭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에서 삭제 결정이 내려져야 하며, 관련 정보에 대해 삭제를 대행할 수 있는 서비스가 존재하더라도 법적 판결이 없는 경우 자발적 삭제에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한 번 삭제된 정보라도 이미 캡처되거나 다른 사이트에 복제되어 있을 경우, 이를 전부 삭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를 들어, SNS에서 삭제된 사진이 다른 사용자에 의해 저장되었다면 그 정보의 삭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기 때문에 한 번 게시된 정보는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이러한 현실은 개인정보 삭제의 어려움을 더욱 부각시키며, 사용자는 신중하게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 의의

국내외로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가 등장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위 서비스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하고, 필요 없는 정보는 삭제하는 것의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물론 이들 서비스에도 문제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람들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게다가, 이런 서비스들이 등장함으로써 기업들도 개인정보 보호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법적 규제나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려는 압박이 생기기도 한다. 이는 결국 사용자들에게는 더 나은 보호 환경을 제공하고,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고민을 일상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진다. 이런 변화는 우리 사회가 개인의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2) 해외 셰어런팅 관련 법률 및 정책

(1) 프랑스 :「미성년자 초상권 존중에 관한 법률」

프랑스에서 셰어런팅을 제한하는 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자녀가 공유하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는 사진이 온라인 공간에 지나치게 많이 올라온다는 문제의식이 커졌기 때문이며(김아름 외, 2023), 해당 법안을 발의한 스투더 의원은 아이들이 13세가 되기 전 소셜 미디어 플랫폼(SNS)에 공유되는 사진이 평균 1,300건임을 밝히며 무분별하게 공유된 사진은 범죄 및 악용 가능성이 적지 않음을 경고했다(김아름 외, 2023). 이전에 프랑스에서는 아동의 초상권을 규제하는 법률(「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아동 이미지에 대한 상업적 이용 규제에 관한 법률」, 일명 「아동 인플루언서 법」)이 제정되었으나, 이는 아동이 매일 게시하는 콘텐츠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고(김아름 외, 2023), 친권자가 자녀의 의사에 반해서 자녀의 사진을 비롯한 영상을 게시하는 경우와 관련된 규정은 없었기 때문에 해당 법률만으로는 부모에 의한 자녀의 초상권 보호가 미흡할 것이라는 우려 및 비판이 존재해왔다(안문희, 2024).

이에 프랑스 정부는 「미성년자 초상권 존중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여 미성년 자녀(enfant mineur)의 사생활 보호를 친권에 포함시키고, 미성년 자녀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녀의 초상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만약 미성년 자녀의 초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사가 초상권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으며,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초상권을 행사한 결과 해당 자녀의 존엄성이나 도덕성을 침해하는 경우 친권을 강제로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아동의 초상권에 관한 민법의 특별한 조항을 수정하여 부모의 공동 초상권 행사의 조건을 명확히 하고, 아동의 초상권 행사에서의 이해관계 충돌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김아름 외, 2023).

(2) 미국

①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COPPA)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은 1998년에 처음 제정된 미국 연방법이자 미국 정부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법률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 또는 온라인 서비스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다(김아름 외, 2023). 동법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 또는 온라인 서비스 운영자에게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이는 13세 미만 미국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미국에 기반을 둔 기업이 미국 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김아름 외, 2023). 미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요소를 가지고 있거나, 아동을 주타겟으로 삼거나, 일반 유저 서비스라도 아동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이 있는 경우 모두 이를 준수해야 한다(김아름 외, 2023). 동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경우, 다음 내용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19)]

①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Privacy Policy 제공
②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 부모에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 고지
③ FTC(미국연방거래위원회) COPPA Rule에서 허용하는 방법에 따른 유효한 부모 동의 획득
④ 아동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접근권 등 아동 개인정보 관련 부모 권리 보장
⑤ 수집한 아동 개인정보의 기밀성, 보안성, 무결성을 보장하고, 이를 보장하는 제3자에게만 개인정보 제공
⑥ 수집한 아동의 개인정보는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만 보관하며, 파기 시 허가되지 않은 접근이나 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단으로 파기

② 「디지털 세계의 캘리포니아 주의 미성년자의 프라이버시권리」(「온라인 지우개법」)

「디지털 세계의 캘리포니아 주의 미성년자의 프라이버시권리」, 일명 「온라인 지우개법」은 미성년자들이 인터넷 및 모바일 앱을 사용할 때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및 공개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법률으로, 비즈니스 및 전문직 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Division 8에 '디지털 세상에서 캘리포니아 미성년자를 위한 프라이버시권(Chapter 22.1. Privacy Rights for California Minors in the Digital World)'을 추가하여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다(김아름 외, 2023). 동법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공유하기 전에 그의 법정 대

19)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 (n.d.). *글로벌 지원: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COPPA).* https://privacy.naver.com/global_support?menu=global_support_usa_children_privacy.

리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성년자가 개인정보를 게시한 경우 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등에는 미성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김아름 외, 2023). 동법은 미성년자가 온라인상에 남긴 과거로 고통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선진적인 주법(州法)으로 평가된다.[20]

(3) 영국 :「연령적합설계규약」(Age Appropriate Design Code, AADC)

영국의 개인정보 보호법(Data Privacy Act, DPA) 제123조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제시한 영국의 아동권리보호 의무에 근거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 아동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 유엔아동권리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의 '아동의 표현과 종교의 자유,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미디어 정보에 접근할 권리, 나이에 적합한 여가를 즐길 권리, 각종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준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나종연 외, 2019). 본 규약은 연령에 적합한 15가지 설계 표준(①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 ②개인정보 영향 평가, ③연령의 적합한 적용, ④투명성, ⑤데이터 오남용, ⑥처리방침 및 커뮤니티 표준, ⑦기본 설정 ⑧데이터 최소화, ⑨데이터 공유, ⑩지리적 위치, ⑪아동 보호를 위한 부모의 통제, ⑫프로파일링, ⑬넛지 기법, ⑭커넥티드 완구 및 장치 ⑮온라인 도구)을 두고 있으며(한국인터넷진흥원, 2020), 아동이 연령에 따라 다른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아동의 연령을 총 5개의 단계(영유아기, 초등기, 전환기, 10대 초반, 예비 성인기)로 나누어 연령별로 보호 조치를 규정하였고, 구체적인 적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나종연 외, 2019).

①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든 아동에게 기준의 표준을 적용해야 한다.
② 연령 검증을 사용하는 경우 확실하고 프라이버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라.
③ 사용자의 연령대에 맞게 측정값을 조정하라.

(4) EU :「일반정보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일반정보보호 규정」은 1995년부터 시행된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수정, 보완한 후 법령화한 것으로,[21]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처리 및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관련 권리 강화를 위해 제정되었다(조수영, 2018). 해당 법률은 삭제할 권리(잊힐 권리),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의무, 데이터 보호,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 규정 등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명시하고 있다(김아름 외, 2023). 특히 제17조에 잊힐 권리를 규정한 것은 유럽연합에 잊힐 권리가 하나의 독자적인 권리로 성문법에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한동훈, 2021). 동법은 적용 대상을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에 한정하지 않고, 특정요건을 갖출 경우 개인정보영향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조수영, 2018). 한편으로는, 미성년자 관련 데이터 수집에 부모 동의를 요구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하고자 입법적으로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실효성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박아란, 2023).

(5) 의의

이러한 해외 사례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의의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셰어런팅과 맞닿

20) 서울지방변호사회. (2017. 5. 2.).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최근 동향". http://news.seoulbar.or.kr/news/articlePrint.html?idxno=679.
21) 국민권익위원회. (2018). "GDPR, 일반정보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https://www.acrc.go.kr/briefs/201808/sub3.html

아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국내에서도 '아동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만, 해외사례의 경우 의무와 강제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더 발전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자녀의 초상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의 사생활 보호를 친권에 포함시키거나, 아동 연령별로 15개의 설계 표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보호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실천을 염두에 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의를 통해 우리는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접근성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점, 이러한 개인정보 삭제 요청이 공공의 이익과 충돌할 경우 삭제가 거부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해외 역시 국내와 같은 한계를 가진다.

3) 국내 셰어런팅 정책화 지연 원인

이렇게 국내와 해외의 셰어런팅 법률 및 서비스 현황, 그 의의와 한계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이를 통해 발견한 국내의 셰어런팅 정책화 지연 원인은 아래와 같다.

(1) 논의의 미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해외에 비해, 한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개념이 법적·사회적으로 논의된 역사가 짧다. 국내에서는 최근까지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개인정보 관련 보안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들 사이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고 있다(이경복 외, 2016). 그리고,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 2016년 이전까지 그들 자신과 아이의 사생활을 함께 노출할 우려가 있는 젊은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SNS 연구가 전무했던 이유는 아이가 부모의 소유물이라 여기는 한국 사회의 통념으로, 어머니가 자녀의 사진과 기타 신상정보를 SNS에 게재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여기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김송이, 2015). 앞서 살펴보았던 미국의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과 유럽연합의 「일반정보보호 규정」(GDPR)은 아동의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 장치들은 셰어런팅을 포함한 다양한 아동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법적 장치가 부족하고, 셰어런팅으로 인해 발생하는 디지털 발자국이나 장기적 영향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가족 중심적 문화가 강해 부모가 자녀의 삶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한 만큼 부모가 자녀의 이미지를 공유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사진을 공유하는 것이 가족의 일상적인 행위로 여겨지며, 이를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디지털 정보사회가 도래하며 많은 부모들이 SNS를 통해 자녀의 일상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 국내에서도 셰어런팅이 일상적인 행위가 되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논의는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 셰어런팅으로 인해 사이버 범죄, 딥페이크, 개인정보 유출 등 아동이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음에도, 부모들은 일상적으로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보아 셰어런팅 문제에 대한 경각심은 아직 부족해 보인다. 아직 셰어런팅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들은 SNS에 자녀의 사진 및 영상을 올리는 일상적인 행동이 자녀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셰어런팅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해외에 비해 부족하다. 몇몇 해외 연구자들은 셰어런팅이 자녀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자녀가 범죄의 위

험에 처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반면, 국내에서는 최근에 들어서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되었을 뿐,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강누리&강지영, 2022).

(2)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질의를 통해 국내에서 셰어런팅 정책화가 지연되고 있는 원인이 셰어런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미비한 것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2022)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으로 ①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 ②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③권리 실현을 위한 적극적 지원, ④투명성 확보를 통한 아동의 역량 강화 및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보호조치를 두고 있고,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단계를 총 다섯 단계(기획·설계, 수집, 이용·제공, 보관·파기, 권리보장)로 나누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에 관한 인식과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셰어런팅과 맞닿아 있는 내용은 <부록1: 보호자 및 교사를 위한 안내사항>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해당 부분에서는 SNS상에 아동의 사진이나 영상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온라인상에 오랫동안 남을 수 있고, 과도한 개인정보 공개로 인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나, 부모와 아동이 셰어런팅 문제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2. 셰어런팅과 관련한 사회복지학적 접근

1) 사회복지학 이론을 통해 바라본 셰어런팅

아동의 셰어런팅 문제는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결정모델(Loewenberg & Dolgoff, 1996)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때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7단계로 이루어진 모델이다. 본 연구에서는 셰어런팅과 관련된 자율성과 자유, 최소 해악, 사생활 보호 및 비밀 보장에 중점을 두어 논의하고자 한다. '자율성과 자유'에 단계에 따르면 아동은 개인정보의 공개에 대한 자율성,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아야 한다. '최소 해악' 단계에 따르면 초상권 및 인격권의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 해야 하며, 이에 따라 셰어런팅 행위를 중지하거나 얼굴을 가리는 방법 등을 통해 해악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은 셰어런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본질적으로 이러한 행위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해당 단계는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도 맥을 같이 한다.

브론펜브레너(Urie 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론도 셰어런팅 문제의 분석에 있어서 유용하다. 사회복지실천에서 주요한 개념인 메리 리치몬드의 '환경 속의 인간' 개념과 유사한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생태체계적 접근은 단순히 아동의 수치심 유발, 부모의 개인적 선택에서 그칠 수 있는 셰어런팅 문제를 여러 체계 간의 상호작용 관점으로 해석할 여지를 제공한다. 해당 문제가 사회복지실천에 맞닿아 있음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해당 접근은 의미를 가진다.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 변인 순으로 후술하겠다.

(1) 미시체계

미시체계(microsystem)란 개인이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가까운 환경 내에서의 요소들로, 부모, 형제, 학교, 친구같은 요소가 이에 포함된다. 셰어런팅 행위는 부모가 아동을 사이버 공간에 공유하는 것으로, 해당 체계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행위이다. 이로 인해 아동은 개인정

보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침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자기 효능감 및 존중감 저하, 부모와의 배척 관계 강화 등의 정서를 형성시킬 위험이 있다.

(2) 중간체계

중간체계(mesosystem)란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체계이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부모와 친구간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셰어런팅의 경우엔, 부모가 공유한 자녀의 사진이 학교 친구들에게까지 공유되어 아동의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중간체계의 작용이라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셰어런팅 행위가 가정 내에서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아동의 생활과도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3) 외체계

외체계(exosystem)란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않으나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환경을 뜻한다. 부모가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SNS), 부모의 회사 내 분위기 등을 외체계로 분류할 수 있다. 높아진 인터넷 접근성을 기반으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SNS)에 셰어런팅을 행하기에 쉬운 환경이 조성되었고, 회사 내에서 자신의 아이 사진을 공유하는 일종의 유행이 존재한다면, 그 역시 외체계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4) 거시체계

거시체계(macrosystem)란 하위체계 구성원 모두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환경, 사회적 맥락이다. 사회 집단의 가치관, 규범 등의 차원에서 바라보면 셰어런팅을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다. 자녀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기억하려 공유하는 것을 지향하는 사회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시간체계

시간체계(chronosystem)란 일생 동안 일어나는 인간의 변화와 사회역사적 환경의 변화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표적으로 아동 연령때엔 셰어런팅 행위에 크게 반감이 없었지만 청소년기에 접어들어 해당 개인정보에 수치심이나 불편함을 느끼고 삭제를 원하는 상황 등이 있다.

IV. 결론 및 제언

1. 셰어런팅의 한국형 모델 제안

위에서 셰어런팅과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들을 알아보고, 이것이 국내와 해외에서 어떻게 논의 및 규정되고 있는지 현황을 살펴보았다. 국내와 해외 모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장에 있어서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리를 보다 강제성을 띤 법률로써 의무화하고 있었다는 점,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에 대한 셰어런팅 문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셰어런팅의 법적 정의 수립 및 정책화

최근 몇 년간 셰어런팅(Sharenting) 활동이 급증하면서 국내외로 다양한 사회적, 법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령은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셰어런팅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부모의 권

리와 자녀의 개인정보 보호를 조화롭게 다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셰어런팅을 법적으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부모가 자녀의 개인정보를 공유할 때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녀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는 셰어런팅 가정 속 아동의 정서를 세심하게 고려하고,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셰어런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를 유지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는 셰어런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셰어런팅(Sharenting)은 부모가 자녀의 사진이나 일상 정보를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는 행위로, 이 과정에서 자녀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과는 다른 복잡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셰어런팅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특히 두드러지는데, 부모의 행위가 과연 자녀에게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모호한 경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셰어런팅으로 인한 피해 여부와 별개로, 당사자들이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와 의존으로 형성되어 있는 관계이기에, 문제의 본질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부모는 자녀의 보호자이자 양육자로서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자녀는 부모의 결정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셰어런팅으로 인해 자녀가 자신의 이미지와 정보가 공개되는 상황에 처할 경우, 부모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22] 따라서 이러한 관계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의 정서는 매우 민감하며, 셰어런팅으로 인해 자녀가 겪는 심리적 영향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공유된 정보로 인해 자녀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정서적 피해는 부모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아동의 정신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아동과 가정의 문제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 간의 셰어런팅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셰어런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이 개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사회적 의식 수준 제고 방안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에서는 셰어런팅이라는 용어 자체도 흔한 개념이 아니며, 셰어런팅 행위가 문제라는 경각심도 부족하다(김송이, 2015). 이렇듯 셰어런팅에 대한 사회적 의식 수준이 낮다면, 아동의 개인정보는 인터넷 공간에서 계속해서 불어날 것이며, 아동의 정신적 피해를 불러올 수 있고, 동시에 사이버 범죄 노출도 역시 올릴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선 셰어런팅에 대한 사회적 의식 수준을 개선하는 단계가 필수적이다.

(1)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셰어런팅 전문 인력은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셰어런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생소한 셰어런팅의 개념에 대해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셰어런팅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아동을 대상으로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자신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한다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여러 가정으로 하여금 셰어런팅의 개념과 그 잠재적 위험성,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셰어런팅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키는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셰어런팅 교육 프로그램이 신청제로 운영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2023년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시행했던 자녀 공개(셰어런팅) 예방 교육 프로그

22) 배진서. (2012). 영유아기 안정적 애착형성이 아동기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지원학회지, 7(1), 241-261.

램[23]은 수강 희망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이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작 교육이 필요한 가정에서 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했다. 따라서 셰어런팅 교육 프로그램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셰어런팅 의식 고양 촉진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나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더욱 확대하려는 노력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2) 관련 기관과 시민단체 조직 및 지원

아동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 또한 셰어런팅에 대한 사회적 의식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시민단체는 시민사회 영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단체 중에서 시민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공익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정부, 비영리적인 조직체를 의미하며,[24] 이들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25] 따라서 아동 관련 시민단체는 셰어런팅을 포함한 아동이 겪는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부모, 자녀와 같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단체로 정의해볼 수 있다.

셰어런팅 문제를 다루는 사회복지사는 셰어런팅의 사회적 의식 제고를 위해 아동 관련 시민단체와 연계를 통하여 셰어런팅의 문제점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셰어런팅의 개념과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을 진행한다면 셰어런팅에 대한 대중의 의식을 일깨우고, 타인의 셰어런팅 행위에 대해 충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되었던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의 잊힐 권리 캠페인'은 한 번 퍼진 아동의 개인정보는 끊임없이 기록되고 공유됨을 강조하며 아동의 잊힐 권리가 법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문구와 함께 이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손쉽게 밝힐 수 있도록 서명할 수 있는 버튼을 마련했다. 또한, 같은 기관에서 진행한 '셰어런팅 다시보기 프로젝트'에서는 대중에게 생소할 수 있는 셰어런팅의 개념과 특징을 알리기 위해 2020년 10월, 아동의 사생활이 침해될 만한 콘텐츠를 제보하는 게시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NGO를 비롯한 아동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들은 셰어런팅에 대한 사회적 의식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홍보 활동이 더욱 많아지고, 확대되어야 하며, 여러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다.

3) 셰어런팅 가족사회복지사의 필요성 제언

셰어런팅 문제는 디지털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소셜 미디어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는 아동의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사이버 범죄 위험 증가로 디지털 환경의 안전을 저해하고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셰어런팅 문제의 심각성과 그 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셰어런팅 문제에 특화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회복지사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 중 가족복지 분야에서 셰어런팅 담당 부서를 신설하는 방향을 논하고자 하는데, 셰어런팅은 디지털 환경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 간에 일어나는 새로운 가족 관련 문제 행위이기 때문이다. 셰어런팅에 대한 전문적 지식 없이 이루어지는 개입은 아동, 즉 클라이언트가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지속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앞서 언급되었던 지우개(잊힐권리) 서비스나 Whiteme 서비스 등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셰어런팅 문제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의 경우 클라이언트가 관련 프로그램을 직접 신청하거나 관련 기관에 직접 도움을 청해야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 셰어런팅 담당 부서의 가족사회복지사(이하 셰어런팅 가족사회복지사)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

23) 권선정. (2023년 5월 23일). 자녀사진, 알고 공유합시다! 개인정보 포털 누리집.

24) 임재형, 김재신, & 김강민. (2021). 시민은 시민단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시민단체의 역할과 신뢰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60*(2), 455-474.

25) 김경희. (2005).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복지관과 시민단체의 협력방안 고찰. *임상사회사업연구*, *2*(1), 41-64.

셰어런팅 가족사회복지사는 부모의 동의만으로 발생하는 아동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정서적 지원, 모니터링, 피드백 등을 제공하며,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중점으로 한다. 이를 위해 소셜 미디어 특성, 디지털 리터러시,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셰어런팅 가족사회복지사는 부모가 셰어런팅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부모-자녀 간 갈등 중재와 의사소통 촉진 기술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세이브더칠드런과 같은 기관에서 셰어런팅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셰어런팅 가족사회복지사는 기존 접근 방식과 다르게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한다. 셰어런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모의 행위에 대한 지적을 넘어서,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는 과정으로 접근해야 하며, 문제 상황에 개입할 때 자녀의 목소리를 반영한 상호작용을 도모하고, 정기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을 통해 자녀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꾸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셰어런팅 가족사회복지사는 사례관리, 통합사례회의, 의사소통 촉진 및 갈등 중재 역할 등을 수행해야 한다. 첫 번째로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과 권리구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모의 셰어런팅 행태에 대한 초기 평가를 통해 자녀의 개인정보 노출 정도를 파악하고, 맞춤형 개입 계획을 수립하며, 관련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자녀와 부모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가령,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와의 연계, 심리 상담 연계 등의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셰어런팅이 일어나는 가정에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해당 가정의 부모와 자녀 모두가 셰어런팅의 잠재적 위험성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례관리 실천은 사례관리자의 관점과 마인드, 인간적인 태도와 자질,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김상곤, 2010) 항상 유념해야 한다.

두 번째로 셰어런팅 가족사회복지사는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다른 분야의 사회복지사들, 전문가들과 연대를 통해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를 꾀한다. 예를 들어, 아동 분야 사회복지사와 협력하여 아동의 정서적 안정 상태를 평가하고 셰어런팅 전후의 아동의 일상적 행동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아동의 정서에 미치는 셰어런팅의 부정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고, 학교사회복지사와 협력하여 학교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셰어런팅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와 협력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Privacy Impact Assessment, PIA)[26]를 실시하여 셰어런팅의 잠재적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셰어런팅으로 인한 아동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셰어런팅 가족사회복지사는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셰어런팅은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셰어런팅 가족사회복지사는 중재자(mediator) 역할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자녀는 부모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중재해야 한다.[27] 이러한 중재 과정은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하며, 자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셰어런팅 가족사회복지사는 지속적으로 가정의 셰어런팅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셰어런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녀의 개인정보 보호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해당 목표는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아동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아동의 사회적 안녕 상태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

26)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화사회의 기획·분석·설계 과정에서 법적 준거성 및 개인정보의 침해 요인을 분석하고, 개인정보 자산가치의 위험평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신영진&김호성, 2010).

27) 엄명용, 김성천, 윤혜미 공저. (2024).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5장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활동과 성찰적 실천

V. 참고문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5. 23.). “자녀사진, 알고 공유합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9. 13.). “내 정보는 지키고 안전하게 즐겨라”.

관계부처 합동. (2022),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0).「스마트폰과의존실태조사」.

김경희. (2005).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복지관과 시민단체의 협력방안 고찰. 임상사회사업연구, 2(1), 41-64.

김송이. (2015). 뉴미디어 시대의 사이버 나눔 육아 (셰어런팅) 와 어머니들의 자녀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 (n.d.). 글로벌 지원: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COPPA). https://privacy.naver.com/global_support?menu=global_support_usa_children_privacy.

법무법인 법승 대전, (2024. 6. 21.). SNS에 자연스레 올린 자녀양육일기의 위험성 [이승우 변호사 인터뷰]. https://www.lawwin.co.kr/daejeon/newsdetail?index=5534

박아란. (2023). 셰어런팅 (Sharenting) 과 디지털 시대 아동의 권리 보호. 언론중재, 168, 54-61.

배진서. (2012). 영유아기 안정적 애착형성이 아동기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지원학회지, 7(1), 241-261.

서울지방변호사회. (2017. 5. 2.).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최근 동향”. http://news.seoulbar.or.kr/news/articlePrint.html?idxno=679.

안문희. (2024). 친권으로서 자녀의 초상권 보호 - 2024년 2월 19일 신설된 프랑스법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203), 41-64, 10.29305/tj.2024.8.203.41.

엄명용, 김성천, 윤혜미 공저. (2024).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5장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활동과 성찰적 실천.

윤기봉, 김민주, 김햇살, 강하늘. (2023). 한국판 셰어런팅 척도(SES-K)의 타당화. 아동과 권리, 27(3), 501-523.

이경복, 윤기찬, 심미나, 임종인, 박태형. (2016). SERVQUAL 기법을 이용한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의 분석.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6(4), 1037-1055.

임재형, 김재신, & 김강민. (2021). 시민은 시민단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시민단체의 역할과 신뢰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60(2), 455-474.

KISA, (2023). 정보주체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재.

WOMAN DONGA, (2024.03.26.). “아이를 위해 유튜브 은퇴했어요” 88만 유튜브 ‘진정부부’ 김민정·이루다. https://blog.naver.com/gurwn1725/223154519415

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아동·청소년의 민법상 법률행위능력(계약능력, 파양결정능력 등)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한동훈. (2021). 유럽연합의 잊힐 권리에 관한 연구 - 프랑스의 경우를 중심으로 -.

화이트미(whiteme): 온라인 일상회복의 첫 걸음 공식 홈페이지 서비스 소개. https://www.whiteme.co.kr/%EC%84%9C%EB%B9%84%EC%8A%A4%EC%86%8C%EA%B0%9C.